

『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라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
- 규칙으로 일부 규정된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법규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목적 및 용어의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기금의 용도 추가(안 제4조)
- 기금운용 회계관직 명칭 등 변경(안 제5조)
 - “기금운용관”을 “기금재무관”으로 변경
 - 기금재무관을 기금업무 담당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
-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(제척·기피·회피 등), 해촉 규정 신설(안 제10조, 제11조)
-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규정 신설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,
「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」,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
 - 상위 법령인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라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규칙으로 규정된 구미시 식품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, 임기 등을 구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